



의안번호	제90호
------	------

<p><b>논산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b></p>
--

제 출 자	서승필 의원 외 4명
제출연월일	2022. 8. 19.

# 논산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90호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8. 19.

대표발의자 : 서승필

공동발의자 : 이태모, 조배식,  
장진호, 윤금숙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22.1.13.시행)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체계 적합성을 강화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법조문 정비(안 제1조, 안 제3조, 안 제9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, 제73조, 제150조,  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, 제84조

나. 기타사항
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- 입법예고 : 2022. 8. 19. ~ 8. 23.(5일간)

## 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의회 조례 제 호

# 논산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3항” 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 제3항” 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” 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73조” 로 한다.

제9조 중 “영 제84조제3항” 을 “영 제84조제3항 및 제4항” 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” 를 “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” 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
- ① 논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2조” 를 “제51조” 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제113조 부터 제116조” 를 “제126조부터 제129조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제117조” 를 “제131조” 로 한다.

②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 이라 한다) 제35조” 를 “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 이라한다)제37조” 로 한다.

제2조 중 “ 제33조제1항제1호” 를 “제40조제1항제1호” 로 한다.

③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” 를 “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” 로 한다.

④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8조제1항” 을 “제46조제1항” 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제88조” 를 “제100조” 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제35조제3항” 을 “제43조제3항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36조제2항” 을 “제44조제2항” 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2호 중 “제36조제2항” 을 “제44조제2항” 으로 한다.

⑤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” 를 “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” 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” 를 “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” 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제146조” 를 “제163조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” 을 “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” 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제9조” 를 “제13조” 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제41조제3항” 을 “제49조제3항” 으로 하며, 같은 조제2항 중 “제41조제3항” 을 “제49조제3항” 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제41조제4항” 을 “제49조제4항” 으로 한다.

⑥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8조” 를 “제46조” 로 한다.

⑦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62조” 를 “제71조” 로 한다

⑧ 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4조·제45조·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” 를 “제53조·제54조·제56조” 로 한다.

⑨ 논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90조 및 제91조” 를 “제102조 및 제103조” 로 한다.

⑩ 논산시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사무관리규정」 제41조” 를 “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41조” 로 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서승필 의원 외 4명

□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83조에 따라 논산시 결산검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이라 한다)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3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에 따른다.</p>	<p>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73조-----.</p>
<p>④ (생략)</p> <p>제9조(검사의견서의 제출)영 제84조 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검사의견서의 제출)영 제84조 제3항 및 제4항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3조(지급기준)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</p>	<p>제13조(지급기준)----- -----</p>

한다. 다만, 이 조례에 규정된  
여비지급 기준외에는 「논산시  
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를 준용  
한다.

-----  
----- 「논산시  
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--  
-----.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제73조(의결정족수)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,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150조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□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

제83조(검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(이하 “검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수는 시·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, 3명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(常勤)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84조(결산 검사 사항)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결산 개요
2. 세입·세출의 결산
3. 재무제표
4. 성과보고서
5. 결산서의 첨부서류
6. 금고의 결산

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.

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④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